

의안번호	제 358 호
의결년월일	1996. 7. 5. (제 45 회)

의결사항	원안 가결
------	----------



## 고성군 화장장 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년월일	1996. 5. 30.

# 고성군 화장장 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5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6.5 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사유

- '89.8.14 개정된 화장장 사용료를 그간의 물가인상 요인등을 감안 인상조정하여 화장장 운영상 수지적지표 최소화하고자 하며,
- 특히 본 화장장은 군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타시군 사용자와의 사용료 차액이 큰 소하므로 타시군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인상율을 조정하여 사용료 부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무연고자까지 확대조정 함(제4조 제1항)
-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신고서에 고무인을 날인 그사유를 기재하도록 함(안 제4조 제2항)
-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정비 함(현행 제5조)
- [별표] 화장장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한 요율을 인상 조정하고 기타 적출물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(안[별표1])

## 3. 관련법률

-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(공설묘지,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)

# 고성군 화장장 사용조례 증개정조례(안)

고성군 화장장 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사용료 감면)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생활보호대상자
2.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
3. 무연고자
4.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자

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였을 때에는 사체매장(화장)신고서의 [별표2]에 의한 감면대상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
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한다.

[별표] 화장장 사용료 징수 기준을 [별표1]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2]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-- 부 칙 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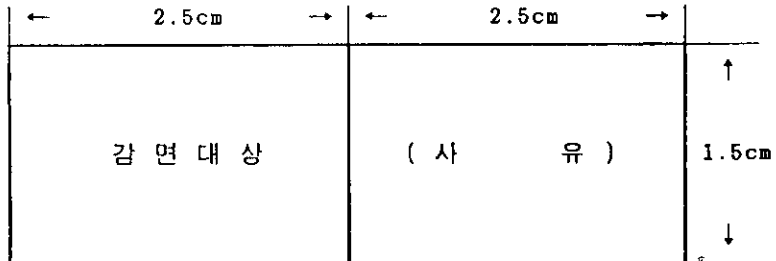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 별표 1 ]

## 화장장사용료 징수기준

구 분	기 준	사 용 료		비 고
		군 내	군 외	
· 15세 이상	1 구당	45,000	90,000	
· 15세 미만	1 구당	30,000	60,000	
· 개장유골	1 구당	21,500	43,000	
· 사산아	1 구당	16,000	32,000	
· 소 , 말	1 두당	25,000	50,000	
· 기타적출물	1 Kg당	1,250	2,500	

[ 별표 2 ]



## 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사용료감면) <u>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</u></li> <li>2. <u>영세민으로서 새마을 노임소득 취로 사업장에 취로사업중 사망한자.</u></li> <li>3. <u>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자.</u>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신 설 )</p> <p>제5조 (군외주민사용) ① <u>군수는 군내 거주주민이 아닌 자에게도 화장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의한 화장장을 사용할 때는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의 100분의 150을 납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6조 ( 시행규칙 ) (생략)</p>	<p>제4조(사용료 감면) ①<u>군수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생활보호대상자.</u></li> <li>2. <u>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</u></li> <li>3. <u>무연고자.</u></li> <li>4. <u>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자.</u></li> </ol> <p>②<u>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였을 때에는 사체매장(화장)신고서에 [별표2]에 의한 감면대상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삭 제 )</p> <p>제5조 (시행규칙)(<u>현행 제6조와 같음</u>)</p>

# 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(별표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화장장사용료장수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>요율구분</th> <th>기준</th> <th>사용료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5세이상</td> <td>1 구당</td> <td>17,500</td> <td row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연료불지참</td> </tr> <tr> <td>15세미만</td> <td>1 구당</td> <td>15,500</td> </tr> <tr> <td>개장유골</td> <td>1 구당</td> <td>8,500</td> </tr> <tr> <td>사산아</td> <td>1 구당</td> <td>7,000</td> </tr> <tr> <td>소 , 말</td> <td>1 두당</td> <td>1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( 신 설 )</p>	요율구분	기준	사용료	비 고	15세이상	1 구당	17,500	연료불지참	15세미만	1 구당	15,500	개장유골	1 구당	8,500	사산아	1 구당	7,000	소 , 말	1 두당	10,000	<p>(별표1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요율구분</th> <th rowspan="2">기 준</th> <th colspan="2">사 용 료</th> </tr> <tr> <th>군내</th> <th>군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5세이상</td> <td>1 구당</td> <td>45,000</td> <td>90,000</td> </tr> <tr> <td>15세미만</td> <td>1 구당</td> <td>30,000</td> <td>60,000</td> </tr> <tr> <td>개장유골</td> <td>1 구당</td> <td>21,000</td> <td>43,000</td> </tr> <tr> <td>사산아</td> <td>1 구당</td> <td>16,000</td> <td>32,000</td> </tr> <tr> <td>소 , 말</td> <td>1 두당</td> <td>25,000</td> <td>50,000</td> </tr> <tr> <td>기타적출물</td> <td>1 kg</td> <td>1,250</td> <td>2,5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(별표2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 text-align: center;">← 2.5cm →</td> <td style="width: 33%; text-align: center;">← 2.5cm →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감면대상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사 유 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↑ 1.5cm ↓</td> </tr> </table>	요율구분	기 준	사 용 료		군내	군외	15세이상	1 구당	45,000	90,000	15세미만	1 구당	30,000	60,000	개장유골	1 구당	21,000	43,000	사산아	1 구당	16,000	32,000	소 , 말	1 두당	25,000	50,000	기타적출물	1 kg	1,250	2,500	← 2.5cm →	← 2.5cm →		감면대상	( 사 유 )	↑ 1.5cm ↓
요율구분	기준	사용료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5세이상	1 구당	17,500	연료불지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5세미만	1 구당	15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장유골	1 구당	8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산아	1 구당	7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 , 말	1 두당	1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요율구분	기 준	사 용 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군내	군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5세이상	1 구당	45,000	9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5세미만	1 구당	30,000	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장유골	1 구당	21,000	43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산아	1 구당	16,000	32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 , 말	1 두당	25,000	5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적출물	1 kg	1,250	2,5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← 2.5cm →	← 2.5cm →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면대상	( 사 유 )	↑ 1.5cm ↓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